

결정서

사건 : 2016-538 권고사직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직위 조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 대학교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심사일 : 2016. 10. 5.(서면), 2016. 10. 19.(서면)

결정일 : 2016. 10.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권고사직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 7. 29.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경과

- 가. 청구인은 2011. 9. 1. [REDACTED]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 나. [REDACTED] 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6. 6. 17.~6. 22. 청구인과 면담을 실시한 후, 2016. 7.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 7. 1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이사회는 2016. 7. 1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7. 14.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을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7.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청구인은 2016. 7. 21. 동 신청을 취하하였음).

바. 청구인은 2016. 7. 18., 2016. 7. 29. 피청구인에게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사유

(처분서 없음)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 조교를 성추행했다고 고발되어 학교 성폭력위원회에서 세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 학교 교단 인터넷 뉴스인 ‘성결네트워크’의 기사에서 관련된 모든 일이 청구인의 잘못으로 보도가 되어 난처해진 총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진 사퇴를 부당하게 강요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점에 대해 청구인은 복직하여 정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4. 판단

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을 의결한 일련의 과정(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 의결’라 함)이 사실상 피청구인의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이 사건 의원면직 의결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1)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7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등 참조).

2)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의 원면직 의결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무효에 해당하거나, 혹은 피청구인의 사직권고가 청구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 혹은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원면직 의결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기재에 따르면 [REDACTED] 대학교총장은 2016. 7. 9. 청구인에게 성범죄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가 결정되면 교수 임용도 불가능하고 학교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니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사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대화가 있었던 때(2016. 7. 9.)부터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2016. 7. 12.)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서는 사직서 제출 여부를 숙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될 당시 청구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비위협의로 인하여 정계절차로 나아가게 될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할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설령 청구인이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 녹취록 기재 및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의 경과(청구인의 청원서 제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만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 내지는 제한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사대상 적격 여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의원면직 의결을 「사립학교법」 상의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16. 7. 12. 제출한 사직서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시점에 사직의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루어진 피청구인 이사회 의 2016. 7. 14.자 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



리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심사 대상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2009누29259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인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사대상 적격을 흡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면직 의결을 「사립학교법」상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근우

상임위원 류정섭

위원 박범덕

위원 김효신

위원 손종학

위원 지희순

위원 오행자

위원 우찬제

위원 박용표



위 정본임.

2016. 11.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